

## 회의록

회의 일자	2024년 12월 21일	기록자(서기) 명	이지안
회의명	상임위원회의 12	위원회	외교통상
참석 의원			
김단아, 김은설, 김지호			
회의 주제 (안건명)	국제개발협력법		
회의 내용			
<p><b>김은설 의원 질의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정안 내용에서 관계 기관들이 실종 사건을 확인할 때,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을지 우려. (출입국관리법 제2장 제3조 6항 관련)</li> </ul> <p><b>김지호 의원 답변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급 상황임을 고려할 때, 국가에서도 긴급 상황에서는 법적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.</li> </ul> <p><b>김은설 의원 발언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제개발협력법의 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의 투명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 제시.</li> </ul> <p><b>김보민 멘토 의견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내용은 이미 대통령령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답변.</li> </ul> <p><b>김지호 의원 발언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[추가적으로 확정된 사항들]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b>제4조 수정: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개발도상국과 대한민국이 균등한 위치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, 협력 과정에서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추가.</li> </ul> </li> <li>2. <b>제14조 수정: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법 시행계획안을 종합·검토하고, 이전에 시행된 국제개발협력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각 소관 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이 포함된 시행계획안(이하 '분야별 시행계획안')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조항 추가.</li> </ul> </li> </ol> </li> </ul> <p><b>김은설 의원 및 김지호 의원 논의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14조 추가 내용은 다소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공유.</li> </ul> <p><b>김보민 멘토 피드백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추가된 내용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<b>강력한 어필</b>이 필요함.</li> <li>- 입법청원안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develop(발전)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.</li> <li>- 감성적으로 접근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.</li> <li>-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실패 및 성공 사례를 많이 찾아볼 필요가 있음.</li> </ul>			
<p><b>비고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a href="#">국제개발협력법 (OFFICIAL)</a></li> <li>- <a href="#">김단아 의원 - 입법청원안 (국제개발협력법)</a></li> <li>- <a href="#"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</a></li> <li>- 추가된 조항(제4조 및 제14조)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근거자료 조사.</li> <li>- 국제개발협력법 추진의 기대효과와 한계 보완 방안 작성.</li> <li>- 입법청원안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 감성적인 접근 방식 검토.</li> </ul>			

- 외통위 상임위원회에 대한 참여율 저하 현황과 그 심각성 인지 시급.